



대구대학교-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업무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(이하 “양 기관”)은 보건복지 분야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기관)

1. 대구대학교
2.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제3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
제4조(협력 분야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이행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협력
2. 장애학 등 보건복지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네트워크 구축, 보유 시설 활용 및 자원 교류
4.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및 현장 변화에 따른 교육 협력 및 자문
5. 기타 보건복지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협의 조정)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기밀 유지) 협약기관은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 이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제7조(효력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협약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법적 권리 의무) 본 업무협약은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제10조(기타) 본 협약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8월 5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박순진

박순진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한국보건복지인재원
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
FOR HEALTH & WELFARE

원장 배금주

배금주

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